

<보도일시: 2024. 8. 14.(수) 09:00 이후>

일자리 TF
'24.8.14.(水)

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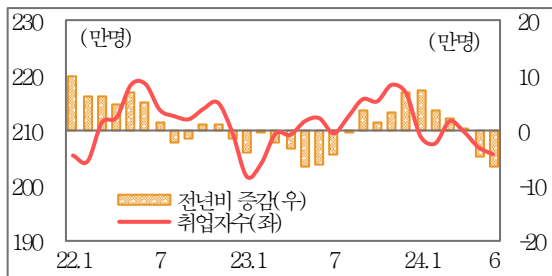
2024. 8. 14.

관계부처합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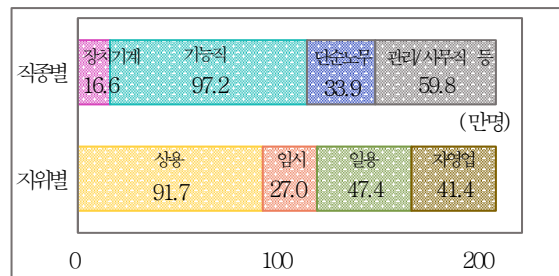
I. 건설업 고용동향

- '24.2분기 건설업 취업자(207.5만명)는 전년대비 △3.6만명 감소, 직종·지위별로는 '장치기계·기능직 일용근로자' △4.7만명 감소

건설업 취업자 증감 추이



건설업 직종별·지위별 취업자수



- 당분간 건설업 경기·일자리의 빠른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

* 건설수주 증감률(전년비, %): ('23.3/4)△44.8 (4/4)22.7 ('24.1/4)△15.6 (2/4) 15.5

* 건설기성 증감률(전년비, %): ('23.3/4) 10.1 (4/4) 0.6 ('24.1/4) 4.1 (2/4)△2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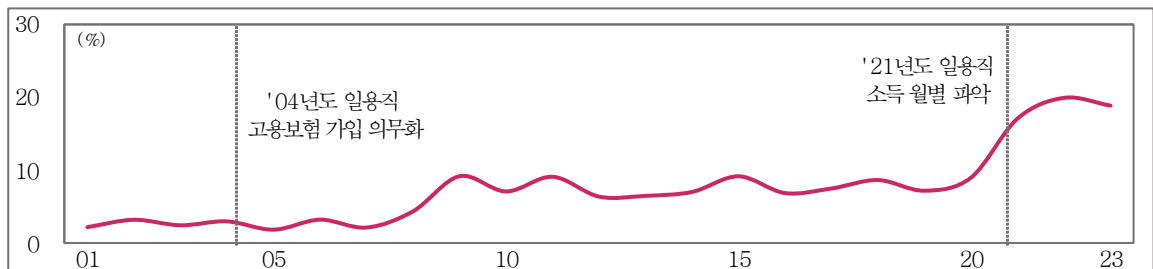
- 누적된 고금리·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브릿지론 → 본PF 전환 및 착공·공기 지연, 대형사업 발주 차질 사례 발생

* 건설공사비 지수(월평균, '20=100): ('21)111.5 ('22)123.8 ('23)127.9 ('24.1~5)130.0

- 일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퇴직후 재취업에 어려움

- '04년부터 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나 건설 일용직의 실제 가입률은 18.8%(상용직 94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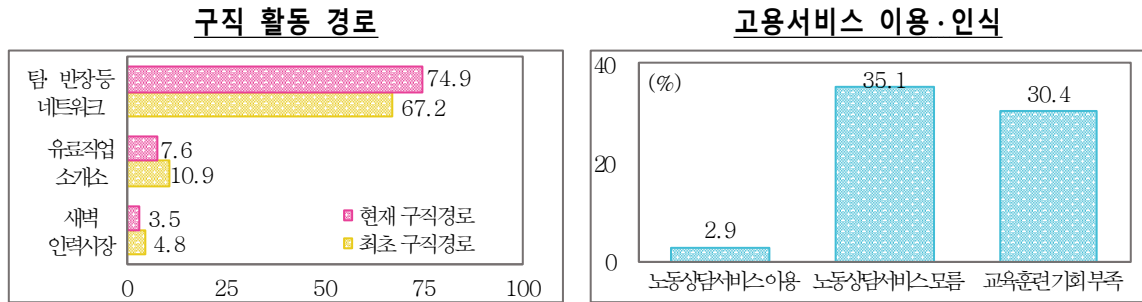
건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



* 경찰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(매년 8월 기준, 통계청)

○ 팀·반장 등 네트워크 중심으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경향도 제도권 고용서비스 활용도를 낮추는 요인

- 건설근로자 중 직업훈련·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율은 2.9%에 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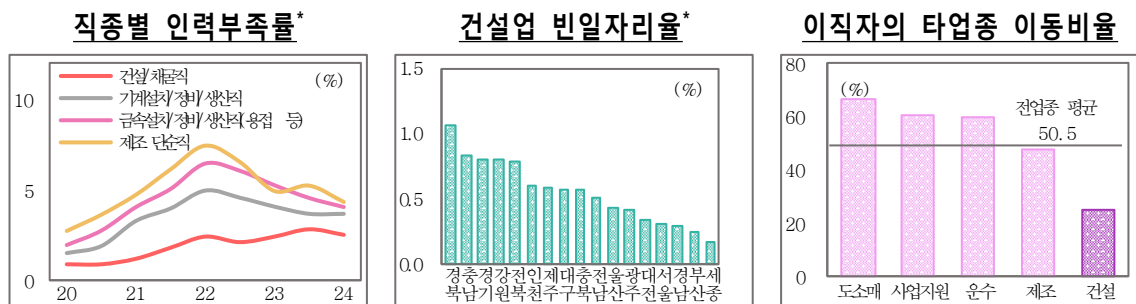


* 건설근로자 종합생활실태조사('22년, 건설근로자공제회)

○ 숙련된 건설인력에 대한 신규채용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나 원활한 이·전직 어려움 등으로 인력 미스매치 지속

- 지역별 인력수급 편차에도 불구하고, 인력수요가 낮은 지역에서 일감 있는 지역으로의 건설인력 이동 부족

- 기능직·장치기계직의 경우 제조업 등 타업종으로의 전직 가능성 있으나 실제 이동 비율은 25%로 낮은 수준



*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(고용부) * 사업체노동력조사('24.1~5월 평균, 고용부) * 일자리이동통계('22년, 통계청)

* 인력부족률: 부족인원(채용계획과 무관하게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 및 생산활동을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)의 비율
빈일자리율: 빈일자리(월 말일 현재 구인활동 하고 있으며,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)의 비율

- ◇ 공공부문 투자 및 주택공급 확대, 공사비 상승 대응, PF리스크 관리 등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**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**
- ◇ **건설 일용근로자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, 인력 수요가 존재하는 숙련일자리·타업종으로의 전직 및 생계 지원 강화**

II. 대응방안

1.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

□ 주택공급 확대방안(8.8일) 신속 추진, 공사비안정화 대책(9월) 마련 등

- 하반기 공공기관 투자규모 확대(+2조원), 상반기 지방공기업 투자 등 미집행액(8.6조원) 신속집행*

* 대규모 투자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 집중 관리 + 사전절차보상협의 조속 이행 등

	투자 확대 규모	세부 투자내용
LH	+13,500억원	부동산 PF 신용보강, 토지보상 협의율 제고 등
철도공단	+4,000억원	동해 북부선(강릉~제진) 신규 추진 등
도로공사 등	+2,079억원	도로 구조물 보강 및 재포장 공사 등
계	+19,579억원	-

- 서울·수도권 42.7만호 등 '주택공급 확대방안'(8.8일) 신속 추진

- 서울·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21만호 이상 추가 공급
 - 서울 및 인근지역 그린벨트 해제하여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공급
 -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화 통해 2만호 추가 공급
 - 빌라 등 비아파트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 공급
- 공급계획 既 확정된 21.7만호 주택 최대한 조기 공급
 - 재건축·재개발 기간 3년가량 단축하여 서울 도심 등 17.6만호 조기 착공
 - LH의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4.1만호 조기 공급 유도

- 관계부처 TF(기재·국토·산업부 등) 통해 '공사비 안정화 대책' 신속 마련(9월)하여 준공 지연 요인 해소

※ 공사비 안정화 과제 예시

- 규제 완화, 골재 공급제도 개선 등으로 자재비 안정화
- 근로환경 개선과 인력관리 선진화로 건설 인력 효율성 확대
- 감독 강화와 조달제도 개선 등으로 시장구조 선진화

-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기반 맞춤형 관리·지원* 및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 위한 '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' 마련('24. 下)

* (정상 사업장) 적시 유동성 공급 및 PF 제도관련 불합리한 사항 시정 유도
(사업성 부족 사업장) PF정상화펀드(1.1조원), LH 사업장 매입(3조원) 등 지원

2. 건설근로자 전직 지원 강화

1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하여 밀착지원 기반 구축

-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특성 감안하여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
 - i) 현장 밀집지역에 지방고용관서·건설공제회·건설인자위로 '건설업 지원팀' 구성하여 현장 안전관리자 및 팀·반장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
 - ii) 현장에서 의무 운영되는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점검회의 통해 팀·반장 중심으로 일용근로자에게 훈련 등 고용서비스 밀착 안내



-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
 - 일용근로자 소득지급내역¹⁾ 및 공사현장별 출·퇴근 전자카드²⁾ 활용하여 미가입자 적극 파악 및 근로복지공단 직권가입 추진³⁾
 - 1) '21.7월부터 일용근로자 소득지급명세서 매월 국세청에 제출 의무
 - 2) '24.1월부터 공공발주 공사 1억원, 민간발주 공사 50억원 이상 현장 의무 적용
 - 3) 건설업 외 업종은 '일용직 근로내역 확인 & 고보 미가입시' 공단이 직권가입 시행중
 - 특별자진신고기간('24.9.1~12.31.) 운영 통해 사업주가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조치시 과태료 한시 면제
 - 영세 사업주 보험료 부담 경감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*
 - *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및 영세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 80% 3년간 지원

※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시 지원내용

- 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요건 충족시 120~270일간 실업급여 수급 가능
- ② 직업훈련 참여시 생계비 대부(최대 1,500만원, 금리1%, 상환기간 최대 5년)
-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시 소득요건(중위소득 100% 이하) 배제
 - 취업활동계획 수당(15~25만원), 직업훈련참여수당(28.4만원) 지원

② 건설근로자 구직역량 및 취업희망에 따라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

- 건설업 지속 근무 희망자는 건설업 지원팀 및 신속취업지원 TF(전국 14개소) 통해 건설업종 빈일자리 취업을 적극 중개
- 건설일드림넷과 건설기능플러스 간 연계를 통해 구인·구직 정보 고도화하고 지역별·직종별 인력수급상황 상세 제공

【현 행】 구인·구직 정보(건설일드림넷) 및 근로자 기능등급 정보(건설기능플러스) 집계·제공

【1단계】 구인·구직 정보와 기능등급 정보 연계하여 건설일드림넷 DB 고도화 ('24.下)

(예: 근로자의 구직 게시물에 근로자 건설기능등급이 자동 연계되어 표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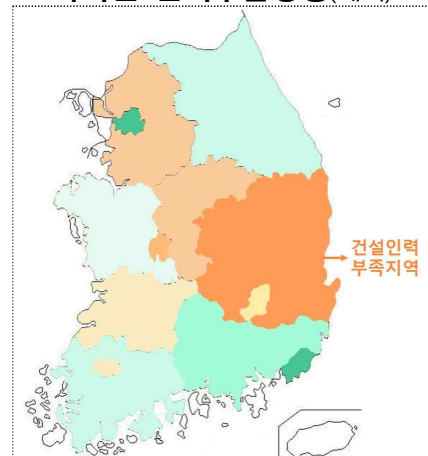
【2단계】 LH, 도로공사 등 공공부문 공사현장부터 인력수급상황 DB 구축 제공 ('25.下)

【3단계】 민간기업 참여 적극 유도하여 민간공사까지 인력수급상황 DB 구축·추진 ('26~)

<서울시 내 건설업 구인·구직 정보(예시)>



<지역별 인력수급상황(예시)>



- 건설업종에서의 전문성 향상 또는 제조업 등 타업종 전직 희망 근로자 위해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 확대
 - 건설인적자원조사 등 수요조사 거쳐 하반기 중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및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집중 공급('24.上 1.2→ 下 1.7만명)
 - 특히,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(現 9개 직종, 480명) 대폭 확대
 - 지역 고용센터·중장년 내일센터에서 전직지원·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맞춤형 훈련과정 적극 안내하고, 훈련참여 인센티브* 제공
- *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훈련 참여시 참여수당 月 28.4만원(최대 6개월) 지급

③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한시 확대 및 생계 부담 경감 병행

- 건설 일용근로자 훈련지원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
 - 건설 일용근로자의 내일배움카드 한도*를 400만원→ 500만원으로 한시 상향(’24.9월~12월)
 - * ’24.9~12월 중 내일배움카드를 신규 발급하거나, 한도 증액 신청한 건설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5년간 내일배움카드 한도 500만원 적용
 - 건설 일용직 근로자 대상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1천만원 → 1천 5백만원으로 확대(금리 1%, 상환기간 최대 5년, ’24.8월~12월)
 - 건설공제회 퇴직공제금 활용한 일용근로자(퇴직공제금 적립일수 252일 이상) 생계비 무이자 대부(최대 300만원, 상환기간 2년) 요건 완화*
 - * (現) 자녀 결혼, 학자금, 가족 수술비, 주택구입, 파산 등 → (改) 요건 미적용
- 건설업 상용직 근로자의 휴업·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시 지급 되는 고용유지지원금(1일 최대 6.6만원) 적극* 지원
 - * 매출액 감소 등 정량요건 미충족시에도 지방고용관서 장이 필요성 인정시 지원
- 위기 건설사 대량 고용변동 신고시 고용상황반 구성 및 맞춤형 지원계획* 수립
 - * (경영악화) 고용유지조치 등 고용조정 최소화, (폐업) 재취업지원, 생활안정지원 등
- 채불임금 청산 지원을 위해 임금채불사업주 용자요건* 완화**
 - * 사업주당 최대 1.5억원, 담보대출시 연 2.2%, 신용대출시 연 3.7%
 - **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(매출감소증명 必) 조건 폐지(’24.8.7일~)

◇ 고용 감소 심화시 **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** 검토하는 한편, 현장 의견 긴밀히 수렴하여 **추가적인 지원방안 지속 발굴·추진**

< 정책과제 예시 >

- ✓ **건설일용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및 고용보험·건설공제회 가입 연계 강화**
- ✓ **기능인력등급제* 활성화 및 현장수요 기반 훈련 강화로 인력 미스매치 해소**
 - * 경력·자격 등 기준으로 4단계(초~특급) 기능등급 산정 및 관리
- ✓ **임금채불 방지 위해 임금직접지급제*를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로 확대**
 - * 대금을 금융기관 전용계좌로 지급하여 건설사에서 근로자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
- ✓ **현장 안전성 제고 위해 스마트 기술 활용 등 안전관리 강화,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확산**

참 고

건설근로자 전직 지원 강화 관련 추진일정

조치사항	추진시기	담당부서
1.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		
▶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	'24.9월	고용부
▶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직권가입 추진	'24.10월~	고용부·근로복지공단
▶ 고용보험 가입 관련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	'24.9~12월	고용부·근로복지공단
▶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	계속	고용부
2.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		
▶ 신속지원TF 운영	계속	고용부
▶ 건설일드림넷 고도화* * ❶ 구인·구직정보와 기능등급정보 연계 ❷ 공공부문 인력수급상황 DB 구축·제공 ❸ 민간기업 참여 유도 및 인력수급상황 DB 확대	'24.下 '25.下 '26년	고용부·국토부·건설공제회
▶ 건설 근로자 특화훈련 공급* * 건설인적자원위원회 등의 훈련 수요조사 거쳐 공급	'24.下	고용부
▶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 확대	'25년	기재부·국토부
3. 직업훈련 지원 한시 확대 및 생계 부담 경감		
▶ 건설 일용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한도 상향* *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(고용부 고시) 개정	'24.9월~12월	고용부
▶ 훈련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	'24.8월~12월	고용부
▶ 생계비 무이자 대부 요건 완화	'24.8월	고용부·건설공제회
▶ 고용유지지원금 적극 지원	'24.8월~	고용부
▶ 고용상황반 구성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	대량고용변동 신고시	기재부·고용부
▶ 임금체불사업주 용자요건 완화	'24.8월	고용부